

# 노부모 특별공급 안내문

## □ 특별공급 신청일정

구 분	일 자		시 간	장 소
신청일시	해당지역 (인천광역시 거주자)	기타지역 (서울특별시, 경기도 거주자)	10:00~15:00	당사 견본주택
	7월 4일(화)			
당첨자 선정	7월 5일(수)		14:00	당사 견본주택 개재
동·호수 발표	7월 13일(목)		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	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2you.com)

※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 될 수 있음

## □ 신청자격 및 요건
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06.29)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)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)
-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(배우자도 포함)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의거하여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.
-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'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별표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.
-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유주택으로 처리됨.
-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
  - 주택청약종합저축 :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
  - 청약예금 :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
  - 청약부금 :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㎡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및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자

## □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 분	구비서류
공통서류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(견본주택 비치)
	인감증명서(주택공급 신청용)
	인감도장
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	주민등록표등본[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]
	주민등록표초본[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]
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(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) [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]
해당자	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) / 발급기준 : 본인
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[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]
	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[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]
	피부양 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)
	혼인관계증명서(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/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
대리인 신청시	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
	신청인 인감증명서(주택공급신청 위임용)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

※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※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, 더 정확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.